

# 보도자료



# 양형위원회

2024. 8. 12.

문의

운영지원단장 문중흠  
(☎ 02-3480-1924)

## 양형위원회 8/12(월) 제133차 회의 결과

양형위원회(위원장 이상원)는 2024. 8. 12. 14:00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어,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권고 형량 범위, 양형인자, 집행유예 기준)을 심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

※ 위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양형기준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음

### [심의 요지]

- ☑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과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,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 원 이상(소유형 5) 및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(소유형 4)의 범죄에 대하여도 특별조정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
- ☑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,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제외함으로써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를 축소하고,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음
- ☑ 양형인자인 ‘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’ 및 ‘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 포함)’ 에서 ‘(공탁 포함)’ 문구를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
- ☑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신설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 강화

### 1 제133차 회의결과의 요지

#### 1. 사기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범위 심의

##### ■ 권고 형량범위 설정 방식

- 종전 양형실무의 70~80%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경험적 접근방식

을 원칙으로 하되, 다만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및 법정형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할 수 있음

-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고, 죄질이 무거운 유형에서는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며,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

■ 사기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

- 권고 형량범위안 정리

01 | 일반사기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1억 원 미만	- 1년	6월 - 1년6월	1년 - 2년6월
2	1억 원 이상, 5억 원 미만	10월 - 2년6월	1년 - 4년	2년6월 - 6년
3	5억 원 이상, 50억 원 미만	1년6월 - 4년	3년 - 6년	4년 - <del>7년</del> 8년
4	50억 원 이상, 300억 원 미만	3년 - 6년	5년 - <del>8년</del> 9년	6년 - <del>9년</del> 11년
5	300억 원 이상	5년 - 9년	6년 - <del>10년</del> 11년	8년 - <del>13년</del> 17년

02 | 조직적 사기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1억 원 미만	1년 - 2년6월	1년6월 - 3년	2년6월 - 4년
2	1억 원 이상, 5억 원 미만	1년6월 - 3년	2년 - 5년	4년 - 7년
3	5억 원 이상, 50억 원 미만	2년 - 5년	4년 - 7년	6년 - <del>9년</del> 11년
4	50억 원 이상, 300억 원 미만	4년 - 7년	6년 - <del>9년</del> 11년	8년 - <del>11년</del> 17년
5	300억 원 이상	6년 - 10년	8년 - <del>13년</del> 15년	11년 이상, 무기

-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범죄 편입, 범죄양상 및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, 기존 양형기준의 전반적 재검토를 거쳐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함  
-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죄의 법정형, 양형실무상 평

균 선고형량 등 통계수치, 전세사기·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하여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, 일반사기 및 조직적 사기의 각 소유형 3(이득액 5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)의 가중영역과 소유형 4(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), 소유형 5(이득액 300억 원 이상)의 기본 및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함

- 특히 일반사기 소유형 5(이득액 300억 원 이상) 및 조직적 사기 소유형 4(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)의 가중영역의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하여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, 조직적 사기 중 소유형 5(이득액 300억 원 이상)의 가중영역은 무기징역까지 권고함(종전에는 조직적 사기 소유형 5의 가중영역의 경우에만 무기징역의 선택이 가능하였음)

## 2. 사기범죄 양형기준안의 양형인자, 집행유예 기준 심의

### ▣ 특별감경인자의 범위 축소

- 특별감경인자인 ‘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’의 정의규정 중 ‘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’를 삭제함
  - 대법원 판례(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4도2754 판결)에 따르면,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,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묵비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보험사기가 성립됨
  -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비교하여 그 불법성이 일률적으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움
- ‘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’의 정의규정 중 ‘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’를 제외함
  -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의 특성상,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형량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함

### ▣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함

-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함

## ■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정비

- 감경인자인 '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' 및 '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 포함)'에서 '(공탁 포함)'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
  -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, '(공탁 포함)'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양형인자에서 위 문구를 삭제함
- 감경인자인 '실질적 피해 회복'의 정의규정에 다음과 같은 단서규정을 추가함

### [실질적 피해 회복]

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(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/3 이상)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 **다만,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,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,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.**

- 공탁이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면서,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,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·판단하도록 함

## ■ 집행유예 기준 강화

-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'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'를 새롭게 추가하고, 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인 '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'를 일반사기 유형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제한함

## ② 향후 일정

-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은 1)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, ⇨ 2) 유형 분류 결정, ⇨ 3) 권고 형량범위 설정, ⇨ 4) 양형인자 설정, ⇨ 5)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루어짐. 이번 회의에서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관한 3), 4) 및 5)에 대하여 논의하였음

## ■ 향후 다음 일정을 거쳐 양형기준이 심의·확정될 예정임

- 2024. 9. 양형위원 전체회의: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행기준) 및 수정안 확정

- 2024. 11. 양형위원 전체회의: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(권고 형량범위, 형종 선택의 기준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및 **설정안 확정**
- 2025. 1. 양형위원 전체회의: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및 **수정안 확정, 각 양형기준안 의결**
- 2025. 1. ~ 2025. 2.: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,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절차 진행
- 2025. 3. 양형위원 전체회의: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심의 및 **각 양형기준 최종 의결**

**■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(제134차 회의)**

- 일시: 2024. 9. 30.(월) 오후, 대법원 회의실
- 안건: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행유예 기준) 심의 및 수정안 확정